



2018년 천안의료원지부 산별현장교섭

합 의 서

2018. 12. 28(금)



**전국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천안의료원지부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2018년 천안의료원지부 산별 현장교섭 합의서

천안의료원노·사는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임금]

1. 천안의료원 노사는 2006년 지방의료원 중앙교섭 합의사항을 존중하며, 지방의료원 중앙협약서 제36조 제1항 <별표1>을 아래 <별표1>과 같이 변경한다.
2. 공무원 기본급표 변화에 따른 9급 폐지에 동의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9급을 폐지한다. 9급 폐지에 따른 호봉획정은 <별표2>와 같이 변경하며 2020년 1월 1일 이전 승진대상자는 승진으로 한다.
3. 2018년도 임금인상 적용 시기는 2019년 04월 01일로 한다.
4.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체협약]

1. 복지포인트

2019년 1월 1일부터 복지포인트를 신설.운영하며, 세부 운영 방안은 아래와 같다.

- ① 복지포인트는 개인별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최초 2019년부터 시작하여 2023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별로 인상하되, 연도별 복지포인트는 아래 표와 같다.

년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복지포인트 규모	350,000	500,000	650,000	800,000	900,000

- ② 복지포인트 사용처 등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다.
- ③ 위 ①항과 관련하여 현장 노사합의를 통해 일부 구간에 대한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2. 법적근로시간(52시간 상한제 정착) 법정수당 준수

의료원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주 최장 52시간)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 단, 불가피하게 1일 8시간 초과근무 시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한다.

- ① 당직 근무부서(시설통제실, 장례사업팀,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원무과)는 1명의 인력을 충원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한다.
- ② 법적인력 준수에 필요한 인력확충 및 근무형태 변경은 2019.01.01. 이전까지 완료하고 규정개정을 통하여 조속히(2개월 내) 이행한다.
- ③ 근무형태 변경은 3교대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노사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논의한다.

3.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료원은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9.18)과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2018.9.10.)지침을 준용하도록 하고 전환방식, 시기, 원칙에 대하여는 2019년 6월까지 전환 심의위원회 및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논의한다.

4. 명예퇴직 제도에 대한 운영지침

의료원은 명예퇴직 제도에 세부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적용한다.

5. 합의안 이행

의료원은 4급이상 성과연봉제 폐지 합의에 따라 규정에서 삭제한다.

의료원은 보직임기제 임명에 다면평가와 근무평정을 인사위원회에 올려 의결하고 원장결재 절차를 준수하도록 한다.

6. 감정노동

의료원은 직원, 진상환자, 진상보호자에 의한 폭언, 폭행, 성희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강퇴조치, 경고, 각서 등)을 마련한다.<진료과 협조필수>

7. 단체협약 개정안

제 39 조 【수습기간과 임시직의 사용제한】

1. 신규 채용자의 수습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 41 조 【자동승진제】

1. <삭제> 보건직, 사무직 최초임용 직급부여는 8급으로 임용하되, 입사 1년 6월 경과시 7급으로 자동 승진한다.

제 43 조 【공정하고 민주적인 인사승진 제도의 확립】

1. 의료원은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한다.

제 49 조 【명예퇴직】

3.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지침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

제 55 조 【징계의 종류】

1. 징계는 경징계(견책, 감봉)와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로 구분하되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4) 강등: 1직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임금의 2/3를 감한다.
- 5) 해임, 파면 : 직원의 신분을 즉시 해제한다.
2. 승진·승급 제한 및 복권 : 징계를 받는 자는 아래와 같이 승급, 승진을 제한하며 이에 따른 경과규정은 두지 아니하고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징계에 의하여 누락된 승급에 대하여 자동 복권된다.
- 1) 견책 : 6개월
- 2) 감봉 : 1년
- 3) 강등·정직 : 1년 6개월

제 62 조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5. 간호등급을 3등급이상으로 운영한다.

제 65조 【비정규직 처우개선】

1.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계약직의 경우 공공부문 의료기관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채용한다.
2. 예외조항으로 9급 계약직 채용은 2019년 12월31일 까지만 채용하고 2020년부

터는 8급으로 채용한다.

제 76 조 【당직수당】

1.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법정수당을 지급한다.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조합원이 야근을 할 경우 하루 1인당 2,000원 상당의 야식 또는 1끼를 지급한다.

제 90 조 【시업 및 종업시간】

1. 시업 및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1)통상근무자의 경우

시업시간 : 08시 30분

점심시간 : 12시 30분 - 13시 30분

종업시간 : 17시 30분

<삭제>

제 91 조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

5. 저녁 근무 후 아침근무(E→D)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제 92 조 【대 휴】

<삭제>

제 95 조 【연차휴가 및 수당】

- 1.의료원은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을 준다.
2. 의료원은 재직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삭제>

제 100 조 【주 5일제근무】

1. 의료원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주 최장 52시간)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 단, 불가피하게 1일 8시간 초과근무 시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한다.

제 110 조 【감염관리】

1. 의료원은 환자, 보호자 그리고 직원들의 병원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감염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
2. <삭제>
3. <삭제>

제 123 조 【진료비감면】

3. 의료원은 40세 이하 또는 10년 이하 근무한 조합원에 대하여 종합건강검진 50%를 감면하여준다.(매월1명)
4. 의료원은 10년이상 재직자 기본종합검진을 매월 1명씩 무료로 제공한다(7년에 1회 제공)

[사측 대표]

천안의료원장 이 경 석



[노측 대표]

천안의료원지부장 나 순 자



<별표 1>

지방의료원 2018년 기본급표

구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약사
1	3,148,900	2,698,800	2,411,800	1,989,600	1,785,500	1,591,900	1,448,800	1,316,200	1,785,400
2	3,265,500	2,809,100	2,509,300	2,082,100	1,866,900	1,669,200	1,504,400	1,367,500	1,901,500
3	3,385,400	2,921,100	2,610,400	2,177,700	1,953,200	1,750,800	1,575,900	1,434,900	2,025,200
4	3,506,300	3,035,700	2,715,600	2,275,300	2,043,800	1,834,000	1,652,100	1,506,400	2,156,900
5	3,629,100	3,151,900	2,823,500	2,375,700	2,137,600	1,920,500	1,732,300	1,583,700	2,286,400
6	3,753,100	3,269,200	2,933,600	2,479,000	2,233,700	2,009,200	1,813,200	1,656,700	2,423,700
7	3,878,600	3,387,600	3,045,400	2,582,500	2,330,600	2,098,200	1,893,700	1,728,900	2,569,100
8	4,004,400	3,506,600	3,158,600	2,686,400	2,427,900	2,183,600	1,971,400	1,799,000	2,710,500
9	4,131,300	3,625,900	3,272,100	2,790,600	2,520,500	2,265,200	2,045,700	1,865,400	2,859,600
10	4,258,100	3,745,100	3,386,500	2,888,300	2,609,000	2,342,200	2,117,200	1,930,500	3,016,900
11	4,385,000	3,865,400	3,493,200	2,981,000	2,692,400	2,417,000	2,185,400	1,992,700	3,167,900
12	4,516,700	3,978,500	3,596,300	3,072,200	2,774,300	2,490,000	2,253,200	2,055,600	3,326,400
13	4,639,100	4,084,500	3,694,100	3,158,100	2,852,100	2,560,200	2,318,200	2,116,900	3,476,100
14	4,752,600	4,183,300	3,785,400	3,239,200	2,926,500	2,627,100	2,381,300	2,176,300	3,632,600
15	4,857,200	4,276,300	3,871,500	3,317,100	2,997,500	2,691,500	2,441,600	2,233,400	3,777,800
16	4,954,900	4,364,000	3,952,600	3,390,000	3,064,800	2,753,600	2,500,000	2,287,800	3,928,900
17	5,045,600	4,445,500	4,028,800	3,459,700	3,129,300	2,811,600	2,557,000	2,340,200	4,066,700
18	5,129,900	4,521,600	4,100,800	3,525,600	3,191,000	2,868,000	2,610,100	2,391,100	4,209,200
19	5,207,900	4,592,700	4,168,700	3,588,000	3,249,000	2,922,000	2,662,300	2,441,500	4,335,500
20	5,280,900	4,659,100	4,232,200	3,646,800	3,304,400	2,973,500	2,712,200	2,488,500	4,465,500
21	5,348,500	4,721,200	4,292,000	3,703,400	3,357,200	3,022,700	2,759,100	2,533,600	4,571,800
22	5,411,100	4,779,400	4,348,200	3,756,600	3,407,100	3,070,000	2,804,200	2,576,900	4,691,700
23	5,468,900	4,834,100	4,401,300	3,806,500	3,455,200	3,114,900	2,847,100	2,618,200	4,809,100
24	5,522,800	4,885,500	4,450,800	3,854,100	3,501,100	3,158,300	2,888,400	2,657,000	4,929,400
25	5,567,200	4,932,700	4,497,700	3,899,400	3,544,400	3,199,400	2,927,800	2,695,400	5,044,700
26	5,609,500	4,972,600	4,541,800	3,942,000	3,585,900	3,239,400	2,963,300	2,730,800	
27	5,648,800	5,009,400	4,578,400	3,982,600	3,621,100	3,272,600	2,993,900	2,760,400	
28		5,044,600	4,613,600	4,016,600	3,653,800	3,304,700	3,023,500	2,789,500	
29			4,645,900	4,048,500	3,685,500	3,335,000	3,051,900	2,817,800	
30			4,677,300	4,080,000	3,715,700	3,364,400	3,079,600	2,844,800	
31				4,109,100	3,744,100	3,392,900	3,106,700	2,870,900	
32				4,136,600					

<별표2>

2018년 9급 폐지에 따른 8급 전환 호봉 획정안

구분	8급	9급		획정 호봉	획정후 기본급
1	1,448,800	1,316,200	8급 획정 적용 ➔	1	1,448,800
2	1,504,400	1,367,500		1	1,448,800
3	1,575,900	1,435,000		1	1,448,800
4	1,652,100	1,506,600		3	1,575,900
5	1,732,300	1,583,900		4	1,652,100
6	1,813,200	1,656,700		5	1,732,300
7	1,893,700	1,728,900		5	1,732,300
8	1,971,400	1,799,000		6	1,813,200
9	2,045,700	1,865,600		7	1,893,700
10	2,117,200	1,930,500		8	1,971,400
11	2,185,400	1,992,800		9	2,045,700
12	2,253,200	2,055,600		10	2,117,200
13	2,318,200	2,116,900		10	2,117,200
14	2,381,300	2,176,300		11	2,185,400
15	2,441,600	2,233,400		12	2,253,200
16	2,500,000	2,287,800		13	2,318,200
17	2,557,000	2,340,200		14	2,381,300
18	2,610,100	2,391,300		15	2,441,600
19	2,662,300	2,441,700		16	2,500,000
20	2,712,200	2,488,500		16	2,500,000
21	2,759,100	2,533,600		17	2,557,000
22	2,804,200	2,576,900		18	2,610,100
23	2,847,100	2,618,400		19	2,662,300
24	2,888,400	2,657,200		19	2,662,300
25	2,927,800	2,695,400		20	2,712,200
26	2,963,300	2,730,800		21	2,759,100
27	2,993,900	2,760,400		22	2,804,200
28	3,023,500	2,789,500		22	2,804,200
29	3,051,900	2,817,800		23	2,847,100
30	3,079,600	2,844,800		23	2,847,100
31	3,106,700	2,870,900		24	2,888,400

지방의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

제 1조(목적) 이 지침은 보건의료노조 산하 전국지방의료원(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임직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직원(임직원)의 복리후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전직원(지방의료원 임직원)

제 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맞춤형복지제도”라 함은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복지포인트”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를 활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각 개인에게 부여된 점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3. “지급”이라 함은 배정한 복지포인트를 별도 기준에 따라 각 직원들(임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4조(복지포인트의 배정과 지급) ① 2019년 1월1일부터 복지포인트를 신설, 운영한다.

② 복지포인트는 개인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 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포인트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5일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휴직(육아휴직 포함) 기간 동안에는 복지포인트 지급을 중단한다.

⑤ 휴직(육아휴직 포함), 사직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포인트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5일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 해당 복지 포인트를 환수한다.

⑥ 복지포인트를 매년 1월1일 부여하고,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소멸한다.

⑦ 복지포인트 정산은 사용자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노사합의를 통해 후불제 또는 복지카드 등 결제방식으로 정산한다.

⑧ 복지포인트 사용 항목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복지항목 분야		수혜범위	수혜대상	지급제한
자기계발	학원 수강	- 본인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어학 등 학원 수강 (사이버 강의 포함)	본인	- 자녀 사설학원비
	도서 · 어학기 구입	- 본인의 능력 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 전문도서, e-book		- 자녀 참고서 · 학습지 · 잡지류 등
	세미나 및 학술회의 참가비	- 본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세미나 및 학술회의 참가비		- 지방의료원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자율연수
건강관리	병 · 의원 진료비 등 건강관리 비용	- 건강검진을 포함한 각종 병원 및 약국 진료 - 한방진료(침술 등) - 안경, 콘택트 렌즈, 보청기 - 의료용품, 기기폰, 건강식품	본인 및 부양가족	- 미용 관련 의료행위 (성형, 치열교정 등) - 전기매트, 돌침대 등 구입
	건강관리 시설 이용	- 헬스장, 수영장, 탁구장, 스키장, 골프연습장 등		- 골프장
	스포츠용품 구입	- 스포츠화(등산화 포함), 수영복, 헬스기구, 운동복 등		
여가활용	국내 · 외 여행비용	- 교통비(여행 당일 주유비 포함), 식비, 숙박비 등 국내 · 외 여행에 소요된 비용 - 여행지에서의 각종 입장료 및 이용료	본인 및 부양가족	대중교통비, 주유비 (여행지의 교통비나 주유비 제외)
	공연 및 스포츠 관람	- 영화, 연극, 뮤지컬 - 야구, 축구 등 각종 경기장 입장료		유가증권, 상품권 (온누리상품권제외)
	레저시설 이용	-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레저시설 이용		
	CD · DVD 등 여가 · 레저용품 구입	- 교육, 음악, 영화 등 관련 CD · DVD - 전자제품, 광학제품, 캠핑용품, 악기류		
가정친화	취학전 자녀 보육비	- 취학전 자녀 보육시설(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유아용품 구입	부양가족중 미취학 자녀	- 사설학원비
	기념일 꽃배달	- 기념일 꽃배달 이용	본인 및 부양가족	
	효도관광	- 국내 · 외 여행비용과 동일		
	노인복지시설 이용	- 요양원 및 실버타운 등 시설 이용		
	장례 서비스	- 장례식장 비용, 장례 서비스 업체 이용		

천안의료원 명예, 조기 퇴직 제도에 대한 운영지침

제1조 목적

□ 의료원은 인사규정 제42조2와 제42조3 의한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에 관련하여 근속 연수 계산, 수당지급대상자의 선정,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대상자

□ 인사규정 제42조2와 제42조3 규정에 해당되는 전 직원으로 하되,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1)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 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제3조 지급공고

□ 의료원은 예산확보 된 후 필요에 의한 명예 및 조기 퇴직 공고를 지급대상, 인원, 신청기간, 지급방법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년1회(○월)로 하고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단 예산편성 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노사합의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제4조 명예퇴직, 조기퇴직 등의 지급 신청

□ 명예, 조기 퇴직수당을 등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 조기퇴직 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 조기 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원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지급대상자의 심사 및 결정기준

☐ 의료원은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 하여야 한다.

☐ 심사를 결정함에 있어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한다.

제6조 지급대상자 통지

☐ 의료원은 제5조에 의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속부서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 의료원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신청기간 이후에는 명예, 조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2호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 조기 퇴직수당 등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조 근속년수의 계산

☐ 보수규정 제33조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제9조 명예, 조기 퇴직수당 등 지급 계산

☐ 보수규정 제31조, 제32조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중앙교섭 합의서의 기본급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10조 심의대상

☐ 명예,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명예, 조기 퇴직수당 등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명예퇴직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제11조 지급절차

☐ 제5종에 의하여 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 조기 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퇴직예정일 및 수당지급기한

- ☐ 퇴직 예정일 : 매년 10월 달에 30로 함
- ☐ 수당지급일 :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

부칙

☐ 명예,조기 퇴직으로 인한 인력 감소에 대해서는 제5조에 의거 대상자 결정 후 7일 이내에 채용공고를 시행하고 2개월 이내에 대상자의 인력만큼 충원한다.

☐ 노사 양측은 조합원들에게 명예, 조기퇴직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 경영상의 이유 및 예산 미확보 등으로 지급상한액 제한이 필요한 경우 노사합의(신청자 동의)로 일회에 한하여 조정 할 수 있다.

☐ 명예퇴직으로 인한 퇴직 시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